

[별표]

제조소등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 부여 방법(제2조제3항관련)

□□ - □□□□ - (□□)- □□□□□□

㉠

㉡

㉢

㉣

1. ㉠은 제조소등의 구분번호이며, 다음 표의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기재할 것

제조소	저 장 소								취 급 소			
	옥내	옥외탱크	옥내탱크	지하탱크	간이탱크	이동탱크	옥외	암반탱크	주유	판매	이송	일반
10	21	22	23	24	25	26	27	28	31	32	33	34

2. ㉡는 설치허가번호 또는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번호이며, 다음 각목에 의하여 기재할 것(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㉡는 변경되지 않고 ㉣만 변경됨) <2008.5.23 개정>

가. 설치허가번호는 허가청 내에서의 설치허가 일련번호를 기재하되, 제조소등의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통괄하여 허가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할 것

나.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번호는 설치허가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

다. <2008.5.23 삭제>

라. 연도가 바뀌어도 설치허가 일련번호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

3. ㉢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번호로서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에만 해당성이 있는 것이며, 하나의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(적재차량 1대 및 이동저장탱크 1기)에 컨테이너식이동저장탱크를 추가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탱크에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. 이 경우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는 소속되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번호를 유지한다.

4. ㉣는 허가연월일 또는 완공검사연월일이며, 허가번호의 부여시에는 허가처분 연월일을 기재하며, 완공검사번호의 부여시에는 완공검사합격 연월일을 기재함(연도는 둘째자리까지만 기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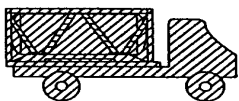
예시1) 2004. 11. 5, 제조소 1개소, 옥외탱크저장소 2기를 허가하고, 2005. 3. 30에 완공검사합격처분을 한 경우

제 조 소 : [10-0015-041105](허가번호), [10-0015-050330](완공검사번호)

옥외탱크저장소 A : [22-0016-041105](허가번호), [22-0016-050330](완공검사번호)

옥외탱크저장소 B : [22-0017-041105](허가번호), [22-0017-050330](완공검사번호)

예시2) 2004. 11. 5,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(적재차량 1대 및 이동저장탱크 1기)에 이동저장탱크 2기를 포함하여 허가하고, 2004. 11. 20에 완공검사합격처분 한 후, 2005. 3. 30에 이동저장탱크 1기를 추가하여 허가하고 2005. 4. 2 완공검사합격처분 한 경우



[26-0017-1-0411

[26-0017-2-0411

[26-0017-3-0411

[26-0017-4-0503

[26-0017-1-0411

[26-0017-2-0411

[26-0017-3-0411

[26-0017-4-0504

주) 위의 것은 허가번호이며, 아래의 것은 완공검사번호임